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야생동물 질병예찰, 진단·분석, 조사·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,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5를 삭제한다.

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을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고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에 따라 보고 및 검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4(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)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”이란 <u>국립환경과학원장</u> 을 말한다.	제23조의4(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) -- ----- ----- --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</u> -----.
제23조의5(야생동물 질병의 통보 기관) 법 제34조의7제5항제3호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</u> ”이란 <u>질병관리본부장</u> 을 말한다.	<u><삭 제></u>
제37조(보고 및 검사)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<u>국립환경과학원장</u> 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.	제37조(보고 및 검사) ----- ----- <u>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권한의 위임) ①·② (생 략)	제39조(권한의 위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의8제1항에	③ ----- -----

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권한을 <u>국립환경과학원</u> <u>장</u>에게 위임한다.	----- ----- <u>국립야생동물질 병관리원장</u>---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생물다양성과	
연 락 처	(02) 770 - 7248